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문화스포츠대학 학생회칙

2018년 회칙제정위원회에서 제정  
2019.2.10. 회칙 공표  
2021.05 부분개정  
2025.11.17. 부분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문화스포츠대학(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본회 회원의 자주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정신 창조와 전통적 학도정신을 함양하고, 자유 정의 진리의 건학이념의 계승과 지성과 야성의 조화로 조국의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실현하고, 시대정신을 선구하는데 적극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회원]

- 본회의 회원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문화스포츠대학의 모든 재학생(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으로 한다.
- 단, 휴학생은 준회원의 자격을 지닌다. 휴학생은 휴학 기간 동안 준회원이 되며,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대학원생은 회원에서 제외한다.
- 졸업, 자퇴, 퇴학 등으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부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으며, 정학 등의 사유로 회원으로서 가진 권리와 의무가 일시 상실되었다 판단 되는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국내, 외국대학의 재학으로 교환, 방문 학생 또는 이에 따르는 자격으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부 과정을 수학하는 자는 그 동안 교류회원이 된다. 교류회원은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문화스포츠대학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활동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회칙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학문 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제5조 [구성]

본회는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학생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본회의 회원을 비롯한 문화스포츠대학 학생회, 국제스포츠학부 학생회, 문화유산융합학부 학생회, 문화창의학부 학생회로 구성된다.

### 제6조 [기구]

본회는 원활한 학생자치활동을 위하여 의결기구인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와 집행기구인 문화스포츠대학 학생회장, 문화스포츠대학 집행위원회, 학부 집행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 [권한]

1. 본회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문화스포츠대학의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2. 본회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3.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 제2장 의결기구

### 제 1절 학생총회

#### 제8조 [지위]

문화스포츠대학 학생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제9조 [구성]

총회는 제3조 1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 제10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문화스포츠대학 학생회장으로 한다. 만약, 학생회장이 궐위 시에는 제35조 1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이 임시 의장을 맡는다.

#### 제11조 [업무 및 권한]

1. 본회 회칙 개정의 발의, 의결
2. 본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심의·승인
3. 문화스포츠대학 회장단 탄핵안 심의·의결
4. 본회 집행위원회 국장의 출석요구
5. 학생회비 감사 및 심의·의결
6. 기타 단원위에서 상정한 안건 및 회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의결

#### 제12조 [회의]

1. 총회의 소집은 본회의 회원 1/10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시 문화스포츠대학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10일 전에 그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원위에서 즉시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는 본회 회원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된다.

#### 제13조 [의결]

1. 총회 성원의 1/4 이상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2조 3항에 의거 총회의 개최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그 권한은 제3장의 학생총투표나 학생대표자회의, 단원위로 위임한다.

## 제2절 학생총투표

#### 제14조 [구성 및 지위]

1. 문화스포츠대학 학생총투표는 본회의 정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2. 총투표는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총회를 대신하는 의결방식이다.
3. 총투표의 의결은 총회의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 제15조 [실시]

1.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나, 학생총회에서 총투표를 요구한 경우 실시한다.
2. 본회의 회원 1/4 이상의 연서발의 또는 단원위에서의 의안 발의가 있을 시 실시한다.

3. 학생회장은 총투표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관리]

학생총투표의 관리는 단운위에서 인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는다.

#### 제17조 [개표성사율]

학생총투표의 개표 성사율은 다음을 따른다.

- ① 학생회장 탄핵 : 50% 이상
- ② 정책투표 : 20% 이상
- ③ 이 외에 학생총투표를 진행할 사안에는 단운위에서 중요도에 따라 성사율을 결정한다.

#### 제18조 [안건폐기]

학생총투표 개표성사율에 미치지 못한 안건은 폐기한다.

## 제3절 문화스포츠대학 학생대표자회의

#### 제19조 [지위]

문화스포츠대학 학생대표자회의(이하 학생대표자회의)는 총회의 위임기구이다.

#### 제20조 [의장]

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문화스포츠대학 학생회장이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제2장 의결기구 제10조[의장]기준을 따른다.

#### 제21조 [구성]

1. 학생대표자회의는 문화스포츠대학 학생회장, 각 학부별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부별 대의원 3인으로 구성된다. (단, 각 학부별 대의원은 개회 전까지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2. 단, 필요한 경우에 위에 규정된 이외의 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단, 의결권이 아닌 발언권만 갖는다.

#### 제22조 [업무 및 권한]

학생대표자회의는 아래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회칙개정 의 발의
2. 회칙개정 의 의결
3. 문화스포츠대학 학생총회 소집요구
4. 학생회비의 심의, 의결
5. 문화스포츠대학의 사업보고
6. 문화스포츠대학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
7. 특별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의결
8. 특별기구 장의 인준
9. 기타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
10. 문화스포츠대학 학생자치 운영을 저해하는 모든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징계 의결 권한 및 징계 집행 권한을 갖는다. 단, 징계 대상자는 본 회의에서 의결 권한을 가질 수 없다.

#### 제23조 [회의]

1. 학생대표자회의는 7일 전에 소집 공지를 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즉시 소집한다.)
2. 학생대표자회의는 총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안건이 있거나 문화스포츠대학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제24조 [의결]

1. 제20조 1항에 해당하는 자만이 의결권을 갖는다.
2.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시 개회,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개회가 불가능한 경우, 단운위에 그 권한을 위임한다.

## 제4절 문화스포츠대학 운영위원회

### 제25조 [지위]

문화스포츠대학 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는 본회의 상설 의결기구이며 운영기구이다.

### 제26조 [구성]

1. 문화스포츠대학 학생회장, 각 학부 학생회장으로 한다. (각 학부 학생회장 궐위, 부재 시 해당 학부 집행위원회 중 1인 또는 학부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행한다.)
2. 문화스포츠대학 집행위원회 국장은 단운위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야 하며, 사업보고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제27조 [의무]

1. 문화스포츠대학 학생회장 및 각 학부 학생회장은 본회의 발전과 민주적인 학생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며, 소속 단위의 대표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문화스포츠대학 학생회장 및 각 학부 학생회장은 전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본인이 대의원으로 속한 회의체에 무단으로 불참할 수 없다.

### 제28조 [업무 및 권한]

1. 본회의 제반 사업을 심의 조정한다.
2. 학생대표자회의의 일상적인 업무를 대행한다.
3. 회칙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4. 본회의 집행기구의 업무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심의를 한다.
5. 그 밖에 단운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제29조 [회의]

단운위는 정기 단운위와 임시 단운위로 한다.

1. 정기 단운위는 주기적으로 하고 과반수 참석 시 개최한다.
2. 임시 단운위는 문화스포츠대학 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하며, 과반수 참석 시 개최한다.

### 제30조 [의결]

단운위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장 집행기구

### 제1절 학생회장

### 제31조 [지위]

1. 문화스포츠대학 학생회장(이하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학생회장은 총회, 학생대표자회의, 단운위, 문화스포츠대학 집행부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 사업을 집행한다.

### 제32조 [선출]

1. 문화스포츠대학의 학생회장은 총학생회칙의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2. 보궐선거, 재선거 등 선출에 관련된 기타 사항 역시 총학생회칙의 선거시행세칙을 기준으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치른다.

### 제33조 [업무 및 권한]

1. 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의 자유로운 학술 활동과 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업무에 있어서 회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 수행하여야 한다.
2. 본회의 대표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단운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문화스포츠대학의 집행위원회 국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4. 본회의 각 집행부서를 신설, 폐지할 수 있다.
5. 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34조 [임기]

1. 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확정 공고일로부터 차기 당선자 공고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궐선거 당선자 공고일로부터 당해의 임기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3. 학생회장은 자진 사퇴 또는 해임 시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

### 제35조 [비상대책위원회]

1. 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장(이하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 단, 비대위원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회장이 궐위 되었거나 궐위가 예상된 시점의 단운위 구성원 중 1인이거나 문화스포츠대학 집행위원회 위원 중 1인으로 단운위 내 추천을 통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
  - ②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 혹은 휴학생일 것
2. 학생회장에 대한 해임결정이 있을 때에는 본조 1항을 준용한다.
3.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보궐선거 당선자 공고일까지로 한다.
4.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한다.
5. 비대위원장은 보궐선거 당선자 공고일 까지 문화스포츠대학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리한다.

## 제2절 문화스포츠대학 집행위원회

### 제36조 [지위]

문화스포츠대학 집행위원회(이하 문화스포츠대학 집행부)는 문화스포츠대학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 제37조 [구성]

문화스포츠대학 집행부는 학생회장과 각 국의 국장 및 국원으로 한다.

### 제38조 [조직]

집행 각 국의 신설 및 폐지는 제33조 4항을 준용한다.

### 제39조 [업무 및 권한]

1. 학생대표자회의 및 단운위에서 결정된 업무들을 집행한다.
2. 본회의 운영계획을 단운위에 제출한다.
3.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 제40조 [회의]

1. 집행부는 제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① 임시회의는 학생회장 포함 집행부 2인 이상의 요구로 즉시 소집한다.

## 제3절 학부 집행위원회

### 제41조 [지위]

학부 집행위원회는 각 단위의 자치기구이다.

### 제42조 [구성]

학부 집행위원회는 각 단위의 회원 전원으로 한다.

### 제43조 [학부 학생회장]

각 학부 학생회장은 총학생회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각 단위의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그러나 예외조항은 각 단위의 사정에 따라 학부 내의 논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 (단, 개표율이 각 단위의 학생회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칙에 명시된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제44조 [회칙]

각 학부 집행위원회는 문화스포츠대학 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조직, 업무, 권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인 회칙으로 정한다.

## 제4장 재정

### 제4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 제46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칙을 따른다.

### 제47조 [예산편성 및 심의]

1. 예산은 집행부에서 자율 편성하여 재정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2. 각 학부의 예산 편성은 문화스포츠대학 학생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학부 회칙에 따라 심의한다.

### 제48조 [예산관리 및 집행]

학생회비의 관리는 회계 관리에 준하며, 그 인출 및 집행은 문화스포츠대학 학생회장이 담당한다.

### 제49조 [결산보고]

1. 본회의 재정담당자는 결산보고를 작성하며 매학기 공개한다.
2. 2학기에 (단, 학생회 선거가 시작하기 전) 단운위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산보고를 한다.

### 제50조 [감사]

예산의 실행과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는 매 학기말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다.

### 제51조 [기타]

기타 학부별 지원금(체육대회, 교류전 등)이 발생할 경우, 단운위에서 논의를 거친 후 인원수에 비례하여 국제스포츠학부 : 문화창의학부 : 문화유산융합학부 에 각각 1.5 : 1 : 1로 배분한다.

## 제5장 회계감사위원회

### 제52조 [지위]

회계감사위원회는 문화스포츠대학 소속 전공 및 학부의 회계를 감사하는 기구이다.

### 제53조 [구성]

1. 회계감사위원회의 장은 문화스포츠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2. 전공 및 학부 추천 2인은 각 학과 및 학부의 학생회장, 총무를 제외한 인원으로 선출한다.

### 제54조 [소집]

1. 회계감사위원회는 최소 한 학기에 한번 소집되어 전공 및 학부별 회계보고에 참여한다.
2. 회계감사위원회는 신고 접수 시 3일 이내 소집되어 해당 전공 또는 학부의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 제55조 [권한]

1. 회계감사위원회는 각 전공 및 학부의 회계장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대해 해당 학과 및 학부의 학생회장에게 사유서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4. 회계감사위원은 학과 및 학부의 회계보고에 참여 후 회계감사를 회계감사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56조 [의무]

1. 회계감사위원회가 구성된 후에는 7일 이내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
2. 회계감사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과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없다.
3. 회계감사위원회는 각 전공 및 학부의 회계보고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4. 회계감사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될 시 3일 이내 회계감사위원들을 소집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단, 조사 대상이 된 전공 및 학부 소속의 회계감사 위원은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5. 회계감사위원회가 신고로 소집됐을 경우 소집 후 10일 이내 감사를 마치고 공고해야 한다.
6. 회계감사의 결과는 문화스포츠대학 모든 인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부칙

### 제1조 [유권해석]

이 회칙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의 최종 해석은 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 제2조 [관례의 중용]

기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제3조 [회칙의 우선도]

1. 학부 학생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스포츠대학 학생회칙을, 문화스포츠대학 학생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총학생회칙을 따른다.
2. 회칙 간의 충돌 시 단운위의 의결에 따른다.